

□ 변경 대비표

변경시행일 : 2019년 7월 5일

신한BNPP유로커버드콜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집합투자계약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 제2조 (용어의 정의)</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집합투자"라 함은 2인 이상의 투자자<신설>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집합투자"라 함은 2인 이상의 투자자(또는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p>
<p>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 제8조 (신탁금의 납입)</p>	<p>제8조 (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p>	<p>제8조 (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6조의 신탁원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p>
<p>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 제15조 (자산운용지시 등)</p>	<p>제15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p>	<p>제15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현행과 같음></p>
<p>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 : 제42조 (기타 운용비용 등)</p>	<p>제42조 (기타 운용비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5. <생략>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신설> 7.~9. <생략></p>	<p>제42조 (기타 운용비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5. <생략>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단,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제외) 7.~9. <생략></p>
<p>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 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p>	<p>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생략>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신설>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p>	<p>제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p>

<p>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 제49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p>	<p>제49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이하 생략></p>	<p>제49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제2항에서 정하는 때 <이하 현행과 같음></p>
<p>1.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보완: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p>	<p>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⑥ <생략>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p>	<p>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①~⑥ <생략>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p>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운용인력 변경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2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3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운용인력 변경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박문기,윤동기 -부책임운용역: 허영훈</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박문기,윤동기 -부책임운용역: 김은영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19년 6월 30일)</p>
<p>2.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19년 6월 30일)</p>
<p>3.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신설>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p>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p>3.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이하 생략></p>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이하 현행과 같음></p>

(1) 기재사항 변경

1 운용인력 변경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운용인력 변경 및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제2부 I. 3. 운용전문인력	제2부 I. 3.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박문기,윤동기 -부책임운용역: 허영훈	제2부 I. 3.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박문기,윤동기 -부책임운용역: 김은영 -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19년 6월 30일)